



## 제 목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여부

저희 공장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저희 공장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8개 업종에는 해당사항이 없구요, LNG를 149.94톤(저장탱크 74.97톤 2기)을 저장소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LNG는 산업 연료용으로 사용하고 있구요, 저장된 LNG는 대기식 기화기로 기화하여 일일 약 4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LNG충전은 탱크로리차량에 의해서 충전을 합니다.

[영 별표 10]에는 인화성가스의 규정수량이(최급:5,000kg, 저장:200,000kg)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이런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영 별표 10)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을 정하고 있는 바, 귀 사업장은 인화성 가스(LNG)을 기준량인 5 톤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변경등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이 속한 “호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제 목 | 근로자간 폭행으로 사고발생시 산재승인 여부 등

다름이 아니라, 현장내에서 근로자간 싸움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다른기인들은 없고 서로 실갱이 하는 도중 넘어져 다친) 산재승인시 현장 재해율에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또 무재해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무재해 시간이 깨지는 건지요?

☞ 산업재해 통계 산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결정된 요양신청서 자료와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재해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율에 반영되게 됩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재해운동에 있어 폭행사건의 경우 사건의 내용에 따라 반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무재해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답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역본부(또는 지도원)에 문의하시거나 공단본부 안전문화추진팀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프레스의 안전장치

프레스 안전시설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프레스를 설치한 경우 사업주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만일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사고가 날 경우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 사업주는 프레스에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재해발생원인이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라면 해당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제 목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안전관리비 사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기초 철근 배근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일반 철근 기초 배근이 아닌 높이가 3미터가 되는 기초 철근 배근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철근 배근의 높이가 3미터정도가 되는데 고소작업처럼 작업발판이 없이는 작업을 할 수 없으나 이 작업은 철근을 밟고 작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주근, 보근, 주근, 보근 이런식으로 올라갈수록 개구부와 같은 구멍이 발생하여 근로자들의 발목 절단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배근을 할때 그 위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통행을 할수 있는 발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하려 할때 발판의 용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요?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2(안전시설비 등)에 보면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안전대 걸이 설비, 개구부 덮개, 위험부위 보호덮개, 현장내개부구,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가설 울타리 등,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 목 | 원, 하도급업체간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총공사금액이 2,000억원인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업체 갑의 공사금액이 1,050억원, 하도급업체 A, B,C의 공사금액이 각각 100억원, 800억원 50억원인 경우 원·하도급업체간에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선임하여야 하는지요?

- ☞ 원·하도급업체가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원도급업체가 일률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각각 해당 공사금액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원도급업체는 안전관리자선임 비대상인 하도급업체 C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1,100억원(1,050억 + 50억)에 대한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고
  - 하도급업체는 A사가 100억원 공사에 대해서 1명, B사가 800억원 공사에 대해서 2명을 각각 선임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업체에서 일률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원도급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 비대상인 하도급업체 C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1,100억원(1,050억 + 50억)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하고,
  - 영 제12조제5항 및 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하도급업체인 A, B사의 공사금액을 합한 900억원(100억 + 800억)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2명 추가 선임하는 등 총 4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제 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인건비 계상에 관한 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중에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중 (나항-4의 내용에 고소작업대의 작업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바, 이 항목에서 정의하는

- 1) 고소작업대의 정의 및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 2) 어느 높이 이상 작업이 이루어져야 고소작업대로 보는지요 또 고소작업대의 높이는요?
- 3)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의 '하부통제를 위한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고소작업대는 작업차량에 장착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작업대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조선소 선박외장 공사 또는 건물의 외벽공사 작업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소작업대에 대한 제원 등의 구체적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의 업무는 작업장에서 안전한 작업유도 및 작업자외의 근로자의 출입금지,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등 안전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www.molit.go.kr](http://www.molit.go.kr)) e-고객센터